

고 소 장

고 소 인 ㅇㅇㅇ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피고소인 🛆 🛆 🛆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고 소 요 지

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피고소인 주소지에 소재한 가옥에 20〇〇. 〇. 〇. 〇〇:〇〇 - 20〇〇. 〇. 〇. 〇〇:〇〇까지 ○시간 ○분 동안 감금한 자이니 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고 소 내 용

1.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

피고소인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에서 "○○양행"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는 자이며 고소인은 20○○. ○. ○. 피고소인에게서 ○○○원을 월 ○부이자를 주기로 하고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.

- 2. 피고소인의 범죄사실
 - 가.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금년 ○월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나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금년 ○월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자 피고소인이 20○○. ○. ○. ○○:○○경 고소인의 집을 찾아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소인의 집으로 데려가 원금과 연체이자 합계 ○○○원을 모두 갚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.

- 나. 고소인은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났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함 있는 형편을 이야기하며 말미를 줄 것을 사정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돈을 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며 같은 날 ○○:○○ 고소인을 피고소인의 집 지하실에 감금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 지하실은 창문도 없어 밖에서 문을 잠그면 어느 곳으로도 나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.
- 다.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같이 나간 후 밤 ○○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고소인의 처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결국 다음날인 20○○. ○. ○. ○○: ○○경에야 고소인은 출동한 경찰의 도움으로 감금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.

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고소하오니 법에 의해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고 소 인 ㅇ ㅇ ㅇ (인)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

			`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	공소시효	○년(☞공소시효일론 xx
고소권자	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 (※ 아래(1)참조)	소추요건	
제출부수	고소장 1부	관련법규	형법 276조
범죄성립 요 건	사람을 감금한 때		
· 향	 • 5년 이하의 징역 • 700만원 이하의 벌금 (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: 형법 282조) 		
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	 (항고) ・근거: 검찰청법 10조 ・기간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10조4항) (재정신청) ・근거: 형사소송법 제260조 ・기간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 (헌법소원) ・근거: 헌법재판소법 68조 ・기간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		

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(형사소송법 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